

신청 방법 (방문, 온라인, 팩스 중 선택)



온라인 · 팩스 구직활동이행결과 '작성 예시'



취업성공패키지홈페이지
www.work.go.kr/pkg

1 상호의무협약 체결

방문

- 1 센터 방문하여 상호의무협약서 작성·제출
- 2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 수립

온라인

- 1 상호의무협약서 온라인 작성·제출
↳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 > 저소득층 구직활동이행관리
- 2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진행

팩스

- 1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후 팩스 제출
↳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서식자료실
- 2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진행

2 구직활동이행결과 및 수당신청서 제출

방문

- 1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상담
- 2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·제출

온라인

- 1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전산입력
↳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 > 저소득층 구직활동이행관리
- 2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,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·제출

팩스

- 1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작성 후 팩스 제출
↳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서식자료실
- 2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,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·제출



(1) 회차 구직활동 이행결과

-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(자동생성)
2020. 01. 10. ~ 02. 09.
- 입사지원서 제출 현황
· 제출일자 : 2020. 01. 20. · 사업장명 : (주) 000000000
- 면접응시 현황
· 제출일자 : 2020. 01. 30. · 사업장명 : (주) 000000000
- 고용-복지 연계프로그램 참여
· 자활담당공무원과 육아 및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진행 (2.1 및 2.14일 상담·무상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중)
· 2.8일 심리안전지원프로그램 1회차 상담 진행
- 기타활동내용
· 1.1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00여학원 수강
- 증빙자료
· 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(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알선을 받았거나 입사지원일, 인사담당자 연락처를 아는 경우 제출 불필요),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, 관련 학원 영수증, 면접응 사진 촬영비 등 실제사용 확인자료도 인정



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자가진단 참여방법 알림마당 마이페이지

마이페이지

참여현황

개인정보

성명

전화번호

휴대전화

E-MAIL

주소

인터넷검색
→ 취업성공패키지

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
http://www.work.go.kr/pkg

회원가입

마이페이지
저소득층 구직활동이행관리

구직활동이행보고서 작성

구직촉진수당 신청



취업성공패키지

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안내



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
3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 할 수 있도록
구직촉진수당(생계비 지원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고용노동부

국번없이 1350

지원대상



- 2020. 1. 1. ~ 2020. 12. 31. 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3단계에 진입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
연령 만 69세 이하(초기상담일 기준 연령 적용)

소득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

구비서류

주민등록등본,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(납부확인서), 가족관계등록부(필요시 제출)

지원내용



월 50만원(최대 3개월) = 총 150만원

✓ 만 65세 이상 참여자 : 월 20만원 지원

* 기초연금 수급받는점 등 감안

지급 제외대상



- 생계급여 수급자
- 자치단체 등에서 직·간접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 기간에 중복 수급 불가
- ※ 부정수급 시, 수당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, 재참여 5년 제한

지원요건

상호의무협약 체결 후 **월 2회 이상 구직활동** 이행

구직활동 범위

* 직접 구직활동

▲입사지원서 제출, ▲사업체 면접응시, ▲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등

* 간접 구직활동

▲고용센터,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, ▲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·컨설팅 등 참여, ▲어학·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 향상활동 참여, ▲고용-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, ▲온·오프라인 취업특강 수강, ▲창업 준비, ▲채용 관련 행사 참여 등

증빙자료 제출

- 면접확인서, 인사담당자 명함, 취업특강 수강 확인서, 학원비 영수증, 면접용 사진 촬영 영수증 등

<제출 불필요>

- ▶ 상담사 취업알선을 받아 입사지원 및 면접 참여한 경우
- ▶ 상담사 추천으로 센터 내 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 참여한 경우
- ▶ 구직활동 실비 사용 내역(학원등록, 면접용 사진촬영 등) 이 없는 경우

신청절차



1 상호의무협약 체결

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, 팩스
<http://www.work.go.kr/pkg>

- 구직활동계획 수립

2 구직활동이행결과 및 수당신청서 제출

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, 팩스
<http://www.work.go.kr/pkg>

- 매월 구직활동내역(2회 이상) 제출
* 필요시 증빙 자료 첨부



구직활동 단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

(예) 1회차: 1.1.~1.31. / 2.7.까지 신청
2회차: 2.1.~2.28. / 3.7.까지 신청
3회차: 3.1.~3.31. / 4.7.까지 신청

3 구직촉진수당 지급

- 수당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